의 안 번 호			제	호
의		결	2023.	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, 증거물에 대해열람·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피해자 본인에 대한 열람·등사 관련 규정이 없고, 열람·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보관하고 있는 서류・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・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, 검사나 법원이 열람・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・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2조, 현행 제27조제4항 삭제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형사소송법,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0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0000호),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00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 중 "보호"를 "보호), 제8조의2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 등의 열람·등사), 제8조의3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 등사"로 한다.

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
로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이- 제22조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제22조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준용) -----관한 특례법」의 준용)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「특 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」 제7조(증인에 대한 신변안 전조치), 제8조(출판물 게재 등 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), 제9 ----- 보호). 제8조 조(소송 진행의 협의), 제12조 의2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(간이공판절차의 결정) 및 제13 등에 대한 피해자 등의 열람ㆍ 조(판결선고)를 준용한다. 등사), 제8조의3(피해자 등의 공 판기록 열람 · 등사----. 제27조(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7조(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~ ③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 <삭 제> 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 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 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 다. ⑤ • ⑥ (생 략) (5)·(6)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형사법제과					
연 락	처	(02) 2110 - 3712			